

전문 부서별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우중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사무관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내에서 안전사고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문제 화됨에 따라 '02. 5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금년까지 추진하여 왔다. 그 주요내용은 미신고시설을 현행법에 따라 즉시 폐쇄하기 보다는 '05. 7월까지 신고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고 시설신고기준 완화, 소규모 공동생활시설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열악한 시설개선을 위해 복권기금으로 신축·매입·증개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를 지원(940억원)하여 왔다. 아울러 자격이 없는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장에게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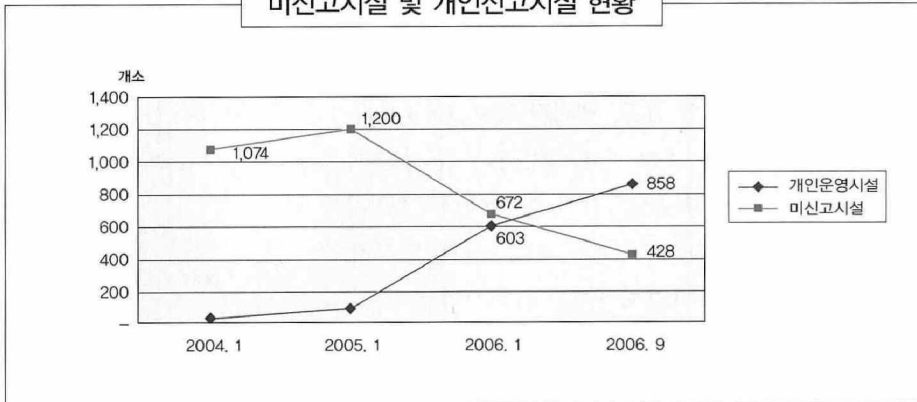
그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미신고시설은 '05년부터 대폭 감소하고 신고시설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미신고시설도 대부분이 '04~'06년 복권기금 및 자부담으로 추진중이거나 자진하여 폐쇄할 예정이어서 건축법, 농지법, 개발제한법 등 법적제한을 받거나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시설(20여개소) 등 약 50여개의 신고전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05년 7월말에 조건부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05년 8월부터 1차 개선명령, 2차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06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처분대상 시설을 분류하여 시설장 청문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행정처분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은 하반기에 생활자를 자진전원하고 시설을 폐쇄토록 하여 현재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시설을 미신고시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계 사회복지 전문가 및 각 종교계 중(교)단에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이어 수렴된 안을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시설장,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 나누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종교시설로 주장하더라도 동 기준에 해당되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시설 및 개인신고시설 현황



※ 미신고시설 428개소(8,880명) 중 노인시설이 56%인 239개, 장애인시설이 30%인 130개소
 ※ 개인신고시설 858개소(13,072명) 중 노인시설이 54%인 465개, 장애인시설이 27%인 233개소

개인운영시설 운영 안정화 방안

개인운영시설은 정부지원 없이 생활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과 후원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환경이 열악하며, 입소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충분한 비용수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개인신고시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신고전환한 개인운영시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당초 금년까지만 완화하기로 한 신고기준을 2009년까지 유예하였다. 또 법인에 적용하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운영시설의 실정에 맞게 고쳐 개인시설 재무회계지침을 제정, 회계서류 보고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외에도 시설회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각 시설에 사용법을 교육시켜서 회계자료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06년도 400개 기관이 신청하여 교육중, '07년도에도 상시 온, 오프라인 신청중 (<http://info.e-welfare.go.kr>). 아울러 아직은 시설행정, 회계처리가 미숙한 신고전환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경험자가 일대일로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회계·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법 등을 시설특성에 맞게 알려주는 멘토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공동 운영, '06년도 400개기관 완료, '07년도도 400여개 기관 예정).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를 위해 친족이 아닌 제 3자가 다수를 동일주소에 등록하고 기초생활 수급권 신청시 시설 담당자에게 미신고시설인지 확인토록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5인이상 생활하는 경우만 시설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하

여 시설로서 관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노인시설의 경우 5인 이상을 시설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재정적으로 개인운영시설도 법상 정부지원이 가능한 대상이지만 예산의 한계 및 법인과는 달리 공공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보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교부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설별로 개인운영시설 지원지침 등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대전 등 일부 시도에서 개인운영시설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 중(인건비 1인, 공공요금, 월정액 지원 등)이거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또 지방의 각 공공기관에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체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금지하도록 하고 관내 기업체 등에도 동 사항을 권고토록 하였다. 이는 열악한 미신고시설일수록 국민이나 기업체의 후원이 집중되고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시설에 후원이 감소하는 모순 때문에 미신고시설이 발생하고 신고전환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미신고시설은 불법시설이고 안전과 인권에 취약한 시설임을 중앙 및 지방언론,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은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여 타인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임의적인 기준이나 시설이 아닌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신고 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실 미신고시설은 적극적인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기 보다는 자선과 봉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시설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이 대부분으로, 정부지원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입소하지 못하는 자나 입소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인한 입소 부자격자 등을 보호해 온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향후 시설 소규모화 및 탈 시설화 등 시설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주는 반면, 시설의 영세성과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던 분들이 신고를 간섭으로 생각하고 불편해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타인을 보호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사명이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조건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호하고 있는 생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조속히 신고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단순히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한 접근에서 나아가 개인신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노력 및 이를 통한 시설 소규모화 촉진,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간 총괄적으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미신고시설 정책을 추진하던 것을 내년 부터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각 시설 유형별로 시설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별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설정책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